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제 356 호                 |
| 의결년월일 | 1996. 7. 5.<br>(제 45 회) |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<br>결<br>사<br>항 | 원 악<br>가 격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


##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(안)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고성군수         |
| 제출년월일 | 1996. 5. 30. |

#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(안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356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'96. 5. 30.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제정이유

- 사회발전과 더불어 각종 법률적 분쟁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하여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"고성군 법률상담 고문변호사"로 위촉하여 피해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법적문제를 신속히 대처 소송수행의 질적향상을 도모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(안제3조)
  -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  -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
  -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-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(안제2조, 4조)
- 수당지급 :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 지급(안제6조)

고성군조례 제 호

##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(이하 "고문변호사"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고문사항)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
제4조(위촉기간등)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사건실적부 비치)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당)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의거 지급일을 조정할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 별지 1호 서식 ]

## 사 건 실 적 부

년 월

| 종 류 | 사 건 명 | 의뢰년월일 | 회신년월일 | 회 신 내 용 | 비 고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|
|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|

※ 종류는 "소송사건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법령해석, 기타"로 기재함.